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 
지원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4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325호로 2024년 4월 9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(안 제6조)
- 마. 자문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(안 제7조~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4. 9. ~ 4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에서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의2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에 근거하여 목적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조제2호는 법 제2조제1호 “평생교육”의 정의를, 제3호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참고하였으며,
- 안 제3조는 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
-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

-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, 제2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 ○ 검토결과

-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고도화된 AI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 평생에 걸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,
- '22년 기준 통계청 자료<sup>1)</sup>에 따르면 25~79세 전체 인구 중 평생학습 참여율은 28.5%인 반면, 19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1.7%로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며,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“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(고령 등의 이유로)”가 56%로 가장 많았고, “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·재활로 인해”가 21%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받음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,
-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'23년

1) 한국교육개발원 「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」 -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, 한국장애인개발원 「장애인삶패널조사」 - 평생교육 참여 현황

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‘202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<sup>2)</sup>’ 공모 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6대 영역<sup>3)</sup>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, 올해 역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되어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하여 4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.

- 반면, 서울시 타 자치구 중 '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(재)선정된 구는 총 4)5곳이며,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
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			
	자치구	조례명	'2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여부
1	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선정
2	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재선정
3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재선정
4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선정
5	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-
6	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-
7	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-
8	마포구	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	-

- 우리 구는 현재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2년 연속

2)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,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

3) 학령보완, 성인문자해독, 직업능력, 인문교양, 문화예술, 시민참여교육

4) [재선정] 서대문구, 은평구 [신규선정] 강남구, 강서구, 종로구

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구가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.

-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 평생교육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28., 2021. 6. 8., 2023. 4. 18., 2023. 6. 13.>
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2. 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이 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 - 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3. “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4. “평생교육사업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5. “평생교육이용권”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6. “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”(이하 “성인 진로교육”이라 한다)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·탐색·준비·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·진로심리검사·진로상담·진로정보·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
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8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4. 23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6. 8.>

**제15조의2(장애인 평생학습도시)**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·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1. 6. 8.]

**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**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

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4. 18.>
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4. 18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18.>

[본조신설 2016. 5. 29.]

**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** ①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4. 18.>

- ②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18.>
-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5. 29.>

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
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
2. 평생교육 상담

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
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
5. 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
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- 제20조(교육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·능력·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